

<p>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異議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정의)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직무”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회의수당”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유족”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·자녀·부모를 말한다.</li> </ol> <p>제 3 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</li> <li>2.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</li> <li>3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</li> <li>4.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</li> </ol> <p>②제1항 각호의 “직무”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“공무상재해인정기준”에 준한다.</p> <p>제 4 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의 상당한 금액</li> <li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</li> </ol>	<p>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. 다만,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②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 5 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제4조제1항제3호의 “상해”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제 6 조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: 사망당시의 유족</li> <li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: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</li> </ol> <p>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제 7 조(보상금의 지급결정)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 8 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.</p> <p>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</p> <p>제 9 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의 구성) ①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</p>
--	---

<p>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의회의원중 1인</li> <li>2. 관련 실·국장 1인</li> <li>3. 의무직 공무원 1인</li> <li>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</li> </ol> <p>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</li> <li>2.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</li> <li>3.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</li> <li>4.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</li> </ol> <p>제11조(심의회 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 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2조(심의회 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.</p> <p>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</p> <p>②간사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</p>	<p>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제15조(심의회의 수당 등)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·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운영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-	---



6 (第80回—第4次)

〈별지 제2호서식〉					
접 수	계	호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		처 리 기 간
					즉 시
보상대상의원	성	명	주민등록 번호		
보 상 금 청 구 내 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해				
사망·장애·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					
심 의 회	〈결 정〉  〈결정이유〉				
심 의 결 과	〈심의위원 서명〉				
<p>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  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 5px;">인</span>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		